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74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김희정 · 김승수 · 박준태
서지영 · 김태호 · 배준영
김도읍 · 강승규 · 엄태영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제5호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6. (생략)</p>	<p><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u> <u>이내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u> <u>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u> <u>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u> <u>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u> <u>라 산정한 비용을 납부하는</u> <u>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u> <u>갈음할 수 있다.</u></p> <p>6. (현행과 같음)</p>
----------------	---